

사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시 및 제안자 : 1992. 8. 14

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2. 8. 21

다. 상정일자 : 1992. 8. 21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 : 별첨안 참조

나. 주요골자 : 별첨안 참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: 별첨 보고서 참조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질의 없음

5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 습.

나. 찬성토론 : 없 습.

다. 표결결과 : 재석위원 12명중 전원 찬성

6. 심사결과 : 원안대로 처리